

제 252 호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양택식

편집 : 공보실장 손왈수

전화 75-7834

1972. 7. 7.
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
시보

차

례

이 영구보존 되는 자료로
처리함을 증명합니다.

1972. 8. 1.

서울특별시 시법과장

◎ 조 례

제 714 호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 공무원
재정보증 개정조례 3

◎ 고 시

제 92 호 도시계획용도지역 일부지정승인 3

제 93 호 도시계획시장 시설 결정 4

◎ 공 고

제 155 호 72년도 제 2 차중소기업육성제정자금집행요령 4

제 156 호 도시계획용도지역 일부변경 6

◎ 사 령 6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6-1
1001

331

조 례

◎ 서울특별시 조례 제 714 호

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 회계 관계 공무원재정보증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72. 7. 4.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하 점 생
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 회계소속회계
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 회계소속 회계
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중 다음과 같
이 개정한다.

제 4 조 제 3 호에 "및 등기부등본"
을 삽입한다.

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 회계소속회계관
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 신, 구대조표
제 4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전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은 별지
제 1 호, 제 2 호 서식 또는 별지 3 호 서
식에 의한 재정보증시에 다음 각호의
서류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.

구	신
1. - 생 략 -	1. - 생 략 -
2. - 생 략 -	2. - 생 략 -
3. 연대재정보증인을 세울때에는 각 보증인의 인감증명서와 별지 제 4 호 서식에 의한 재산평가조서	3. 연대재정보증인을 세울때에는 각 보증인의 인감증명서와 별지 제 4 호 서식에 의한 재산평가조서 및 등기부 등본
4. - 생 략 -	4. - 생 략 -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92 호

도시계획용도지역일부지적승인
서울특별시관대 성동구 성수동 지대
경마장 북측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
가. 용도지역변경조서 (확정)

일부를 도시계획법 제 13 조 규정에 의
거 지적 승인하였기 고시한다.

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
시계획과 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
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2. 7. 3.

서울특별시 장

구 분	면 적 ()				비 고
	기 정	계 획 고 시	확 정	변 경 후	
주 거 지 역	392,864,992	(증) 56,136	(증) 56,136	392,921,128	
녹 지 지 역	255,254,400	(감) 56,136	(감) 56,136	255,198,264	

별첨 도면표시와 같음. (도면생략) 도면은 서울특별시청도시계획국 도시계획
과 및 시민봉사실에 보관. 끝.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93호

도시계획시장시설결정

1. 도시계획시장 시설 결정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

시장시설 결정 조서

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각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시 설 명	위 치	시 설 면 적	비 고
시 장	영등포구신길동 259-4, -7, -8, -9, -10, -11, -15	1,190 m ²	
"	성북구미아동 640-1, -12, -49	1,340	
"	마포구신수동 288-1	1,000	
"	영등포구신정동 415-5, 429	1,006	
"	성동구신당동 308-55	894	
"	서대문구남가좌동 290 - 9	1,046	
"	" " 296-33 외 32 필	2,800	
"	" 연희동 227 - 15	1,106	
"	" 응암동 300-11, 37	1,254	

별첨 각계도면 참조 (도면은 서울시청 관할 시민봉사실에 보관)

1972. 7. 6.

서울특별시장

공 고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155호

72년도 제2차중소기업육성

재정자금집행요령

72년도 제2차 중소기업육성 재정자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함을 공고 한다.

1972. 7. 5.

서울특별시장

1. 시책별 : 수출품 생산 지정업체 지원
2. 재 원 : 72년도 상반기 회수 재원
3. 지원내용

가. 자금구분 : 시설 자금

나. 지원한도 : 10,000,000 원 이내

다. 융자기간 : 1년거치 4년상환

라. 금 리 : 년 12 %

4. 지 원 대 상

상공부 공고제 6612 호 (71.11.2) 에
의한 제 1 및 제 2 유형 해당 품목을
생산하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
생산 지정업체로서

가.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
된 협동조합에 가입을 필하고

나. 71 년도에 50,000 \$ 이상의 수출
실적이 있고

다. 72 년도에 50,000 \$ 이상 수출실
적이 있거나 50,000 \$ 이상 수출할
수 있음을 증빙서류상으로 입증하는
업체

5. 신 청 절 차

가. 신청서류: 소정서식의 신청서 (시청
공업과 배부) 및 관계증빙서류 1부.

나. 신청할곳: 공장소재지 구청 (산업과)
※구청장이 시장 (공업과)
에게 전달

다. 신청기간: 72.7.5-72.7.19 (15일간)

6. 지원대상 결정

실태조사와 서울특별시 재정자금 용
자 대상선정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
거쳐 용자대상을 결정하여 상공부장관
및 중소기업은행장과 해당 업체에 통
보 한다. 끝.

대 상 업 종 품 목

상공부 공고제 6612 호의 중소기업의 유형별 품목

유 형 별		제 1 유 형	제 2 유 형	계
종 별				
기	제	32	165	197
수 송 용 기	제	4	192	196
전 기 기	기	24	65	89
금	속	29	18	47
토 석 , 유 리 제	품	23	1	24
화	학	31		31
고 무 제	품	13		13
제 지 및 동 제	품	12		12
섬	유	83	1	84
식 료	품	24		24
목 재 및 가 구 제	품	23		23
잡	화	118		118
합	계	416	442	858

◎서울특별시 공고 제 156 호

도시계획용도지역일부변경
 서울특별시 관내 성동구 성수동지내
 경마장 북측 일부지역에 대한 용도지
 역 변경이 건설부 고시 제 258 호
 (72. 6. 21) 로 변경 결정 되었으므
 로 도시계획법 제 12 조 제 5 항 규정에

의하여 이를 공고한다.

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
 도시계획과 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
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
 보입니다.

1972. 7. 5.

서울특별시 장

가. 용도지역 변경 조서

구 분	면 적 (㎡)			비 고
	기 정	변 경	변 경 후	
주거지역	392,864,992	(증) 56,163	392,921,128	
녹지지역	255,254,400	(감) 56,136	255,198,264	

별첨 도면표시와 같음. (도면 생략)

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도시계획과
 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. 끝

사 령

◎ 1972. 6. 24.

행복원장 지방행정사무관 김 용 아
 여자기술원장에 보함.

◎ 1972. 7. 1.

관리제2과 지방행정주사보 이 상 길
 지방공무원법 제 63 조의 2
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
 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.

건설국 포장과 지방토목기과 나 정 균
 장 직무대리

지방토목기정에 임함.

3 호봉을 급함.

건설국 포장과장 직무대리

를 명함.

보건사회국환경 지방토목기과 임 성 기
 과장 직무대리

지방토목기정에 임함.

3 호봉을 급함.

보건사회국 환경과장 직무대리
 를 명함.

◎ 1972.7.5.

행 복 원 지방행정주사 심 근
여자기술원 근무를 명함.

행 복 원 지방행정주사 이 재 을
정북구 근무를 명함.

행 복 원 지방행정주사보 구 기 양
여자기술원 근무를 명함.

행 복 원 지방행정주사보 주 무 경
여자기술원 근무를 명함.

행 복 원 지방행정서기 정 상 우
여자기술원 근무를 명함.

행 복 원 지방행정서기보 박 종 화
여자기술원 근무를 명함.

위생시험소 지방행정주사 이 성 모
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.

위생시험소 지방행정주사보 전 재 원
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.

위생시험소 지방행정서기보 박 돌 봉
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.

위생시험소 지방행정서기보 김 영 년
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.

◎ 1972.7.6.

아파트관리과 지방기계기원보 최 대 린
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.

국립건설연구소 건축기사 이 석 우
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.

지방건축기사에 입함.

3호봉을 급함.

건축과 근무를 명함.

문화재관리국 건축기사보 유 영 호
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.

지방건축기사보에 입함.

3호봉을 급함.

주택건설과 근무를 명함.

서울특별시장